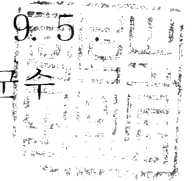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  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역보건법」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5조, 제6조)
  - 법 제34조제2항 → 법 제34조제3항
- 나. 「지역보건법」의 인용 근거 조문을 정비함(안 제4조)
  - 법 제34조제1항 →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
- 다.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제3조, 별표)
  - “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” 해당 조문 신설 및 별표 위반 내용 및 부과금액 명시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, 제22조, 제34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7. 20. ~ 8. 9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”제34조제3항“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

제4조 중 “제34조제1항”을 ”제34조제1항 및 제2항“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각각 ”제34조제3항“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-----제34조제3항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.</p>
<p>제3조(부과대상)            1. ~ 2. (생략)            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부과대상)           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<u>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</u></p>
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제34조제1항 및 제2항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제5조(처분의 사전통지 등)           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처분의 사전통지 등)            ① -----제34조제3항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.</p>

제6조(과태료 부과)

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[별지 제3호서식]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【별표】 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 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	50	100	200
2.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	50	100	200

1.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.

제6조(과태료 부과)

① -----제34조제3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【별표】 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	50	100	200
2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	50	100	200
3.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500	1,000	2,000

1.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.

[별표]

### 과태료 부과기준 (제4조 관련)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	50	100	200
2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	50	100	200
3.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500	1,000	2,000

1.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전일 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.

□ **지역보건법**

**제5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)**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**제22조(정보의 파기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**제34조(과태료)**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개정 2023. 3. 28.>